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10년 세입세출예산총액을 세입세출 각각 팔십오억사백팔십사만팔천원정(₩8,504,848,000원)으로 한다.

제 2 조 세입세출의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명세표와 같다.

제 3 조 2010년도 중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육억원정(₩600,000,000원)으로 한다.

제 4 조 예산의 집행은 당해연도 실현된 수입에 비례하여 지출예산을 집행하도록 한다.

제 5 조 예산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사학재무회계규칙 제2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전용할 수 있다.

다만, 타과목(항)에서 업무추진비로 이용, 인건비의 타과목(항)으로의 이용은 할 수 없다.

제 6 조 예산의 목간 전용은 총장 결재를 득하여 집행하고,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 7 조 예비비의 사용은 이사회 결의로 총장이 집행한다.

제 8 조 예산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예산과목 및 금액내에서 집행한다.